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94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추경호 · 김대식 · 김위상
윤한홍 · 박준태 · 서지영
조지연 · 김정재 · 서천호
안철수 · 박덕흠 · 박충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2) 중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급여.”로 하고, 같은 목 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육과 관련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 -----
가. ~ 러. (생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며,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u>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후단 신설></u>	2) ----- ----- ----- ----- ----- ----- ----- ----- ----- ----- ----- ----- ----- ----- ----- ----- <u>여. 이 경우 보육과 관련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u>

버. ~ 처. (생 략) 4. · 5. (생 략)	<u>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u> <u>도로 한다.</u> 버. ~ 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	---